

## ●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-02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(정기검사 불응)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1월 26일

울산전파관리소장

###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

1. 근거법령 :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
2. 법령위반사항 : 정기검사불응
3. 처분내역 :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(2023. 1. 10. ~ 2023. 2. 9.)
4. 처분일자 : 2023. 1. 10.
5. 송달대상 및 내역

| 순번 | 허가번호               | 호출명칭 | 시설자명    | 처분   | 시설자 주소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1  | 81-2007-20-0000010 |      | 신일천막공업사 | 운용정지 | 울산광역시 북구 |

#### 6. 참고사항

가.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(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)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,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(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 2길 157-6, ☎052-231-8935, Fax 052-257-0909)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